

## 안동시의회 공고 제2021-61호

「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안동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일

안 동 시 의 회 의 장



### 「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 개정(2022. 1. 13.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  
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60조 → 제61조

#### 3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2. 3. ~ 2021. 12. 8.(5일 이상)

#### 4. 의견제출

「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에 의견이 있는

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21년 12월 8일까지 안동시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 · 성명(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, 팩스 또는 직접방문

1) 전자우편 : flora99@korea.kr

2) 주 소 : (우36691) 안동시 퇴계로 115(명륜동), 안동시의회

3) 팩 스 : 054-840-6409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

[붙임1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■ 조례안명 : 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안동시의회 규칙 제 호

## 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1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시행령</u>」 제6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4. 작성자 :

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**제61조(운영 규정)**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